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³
A63B 63/08

(45) 공고일자 1981년03월24일
(11) 공고번호 실1981-0000278

| | | | |
|-----------|-------------------------------|-----------|--|
| (21) 출원번호 | 실1980-0001780 | (65) 공개번호 | |
| (22) 출원일자 | 1980년03월21일 | (43) 공개일자 | |
| (71) 출원인 | 이봉구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33번지 377호 6통 6반 | | |
| (72) 고안자 | 이봉구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33번지 377호 6통 6반 | | |

심사관 : 김영화

(54)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분해사시도.

제3도는 일부를 생략한 본 고안의 요부 종단면도.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장식판을 겸하여 방안벽에 설치할 수 있게한 농구대에 관한 것인데 특히 바스켓과 링을 방안벽에 그대로 설치해 두면 방안의 공간 활용이 불편하게 될 것이므로 바스켓과 링을 손쉽게 착탈할 수 있게 함에 고안의 목적이있다.

종래의 농구대는 경기용이거나 완구용이거나 링이 농구대의 공받이 판에 고정된 것이어서 방안벽에 그대로 설치하면 상기와 같은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본 고안에서는 그와같은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본 고안을 첨부도면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다.

바스켓(11)을 구비한 링(12)을 공받이 판에 고정된 주지의 것에 있어서 판(1) 아랫변의 턱(8)을 구비한 긴홍(9)에 바스켓(11)과 링(12)을 고정된 막대(10)를 밀어 끼우고,

판(1)은 공지한 슬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위변 긴구멍(5)과 내측 주연부 홈(9)을 구비한 틀(2)로 만들어 그림과 연성 투명판(3),(4)을 끼운 것이다.

부호7은 절개부, 13은 못구멍, 14는 못을 표시한 것이다. 작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설치하는 방법은 못(14)으로 판(1)을 벽에 고정하고 틀(2) 위변의 긴 구멍(5)에 그림(3)과 투명판(4)을 끼워 틀(2)이 액자가 되게 한다. 이판(1)은 벽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위 설명과 같이 그림과 투명판(3),(4)을 끼워낼 수 있으므로 공지한 슬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그림을 갈아 끼울수 있으며 투명판을 연성 합성 수지판으로 하면 공의 충격이 가해져도 파손되지 않고 또 더러워지면 닦아낼수 있어서 좋다. 바스켓(11)과 링(12)을 판(1)에 고정하자면 링(12)이 고정된 막대(10)를 턱(8)을 구비한 홈(9)에 밀어끼워 링(12)이 판(1)의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막대(10)는 홈(9)의 턱에 걸려 빠져나오지 아니하고 링(12)은 판에 견고하게 고정된다. 이 링(12)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위 설명과 반대로 막대(10)를 홈(9)에서 밀어 빼면 링(12)은 판(1)에서 간단히 제거된다.

이와같이 본 고안은 공받이 판을 방 안장식으로 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지한 슬라이드식 액자와 같이 그림을 갈아끼울 수 있게 하므로 유용성을 더욱 높이고, 바스켓이 구비된 링을 판에서 손쉽게 착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좁은 방안벽에 설치하기 적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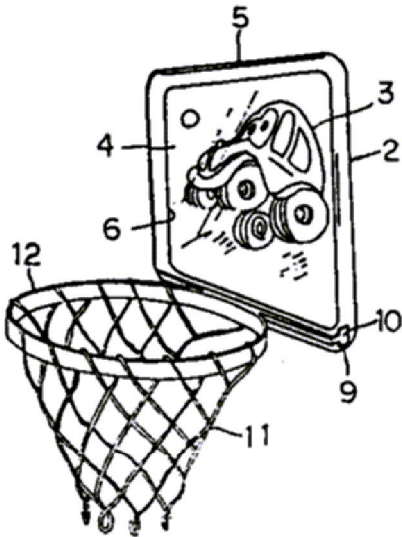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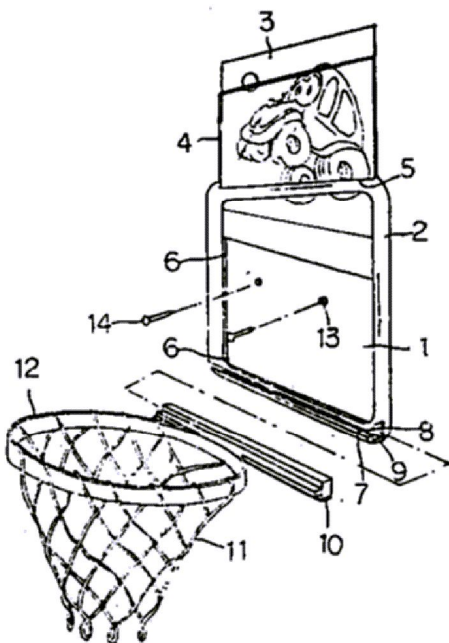
도시한 바와 같이 바스켓(11)을 구비한 링(12)을 공받이판에 고정된 주지의 것에 있어서 판(1) 아래변의 턱(8)을 구비한 긴 홈(9)에 링(12)을 고정한 막대(10)를 끼우고 판(1)에 그림을 끼울 수 있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식판을 겸한 농구대.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